

노무제공자 []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
[]산재보험 입직 신고서

※ 2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(3쪽 중 1쪽)

접수번호		접수일		처리기간 5일	
사업장	사업장관리번호 또는 노무제공플랫폼 등록번호		이용개시번호		전화번호
	명칭		단위사업장 명칭		팩스번호
	소재지		우편번호()		
보험사무 대행기관	번호		명칭		

연 번	성명	공통		고용보험				산재보험	
		주민등록번호 (외국인등록번호)	직종 부호	자격 취득일	국적	체류 자격	월보수액	입직일	휴대전화
1									
2									

「고용보험법」 제77조의7제1항·제77조의10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12제1항·제104조의13제1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제1항제1호,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6조의7제1항제3호 및 제42조의6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보험자격취득·입직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(사용자·대표자)

(서명 또는 인)

보험사무대행기관

(서명 또는 인)

근로복지공단 ○○지역본부(지사·센터)장 귀하

유의사항

1쪽의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(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포함)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「고용보험법」 제118조제1항제1호 또는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제1항제1호·제6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, 노무제공자가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경우 「고용보험법」 제1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사업주도 형사처벌을 받습니다.

작성방법

사업장	<p>1.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는 사업장관리번호를 적고,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노무제공플랫폼 등록번호를 적습니다.</p> <p>2. 이용개시번호는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48조의4제1항에 따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노무제공플랫폼 이용개시 신고를 하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부여받은 노무제공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주의 이용개시번호를 말하며,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만 적습니다.</p>			
공통	<p>1.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)란에는 주민등록표(외국인등록증)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)를 적습니다.</p> <p>2. 직종부호란에는 다음의 직종부호를 참고하여 적습니다.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360 746 2083 1453"> <tr> <td data-bbox="360 746 1227 1453"> <p>950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</p> <p>952 건설기계조종사</p> <p>959 골프장 캐디</p> <p>967 관광통역안내사</p> <p>958 대리운전기사·택송기사·대리주차원</p> <p>949 대여자제품방문점검원</p> <p>945 대출모집인(여신금융기관 소속)</p> <p>946 대출모집인(대출모집법인 소속)</p> <p>951 방과후학교 강사</p> <p>948 방문판매원·후원방문판매원</p> <p>941 보험설계사(생명보험사 소속)</p> <p>942 보험설계사(생명보험사 외 소속)</p> <p>986 살수차·고소작업차·카고크레인 조종사</p> <p>960 소프트웨어기술자</p> <p>947 신용카드회원모집인</p> <p>968 어린이통학버스기사</p> </td> <td data-bbox="1227 746 2083 1453"> <p>981 유치원·어린이집 강사</p> <p>964 유통배송기사</p> <p>982 퀵서비스기사(이륜자동차로 배송)</p> <p>983 퀵서비스기사(자가용자동차로 배송)</p> <p>984 퀵서비스기사(도보·자전거 등으로 배송)</p> <p>944 택배기사</p> <p>943 학습지·교육교구 방문강사</p> <p>963 화물차주(곡물가루·곡물·사료 운송)</p> <p>985 화물차주(기타 품목 운송)</p> <p>956 화물차주(수출입컨테이너 운송)</p> <p>953 화물차주(시멘트 운송)</p> <p>955 화물차주(위험물질 운송)</p> <p>962 화물차주(자동차 운송)</p> <p>954 화물차주(철강재 운송)</p> <p>961 화물차주(택배 지·간선 운송)</p> </td> </tr> </table>		<p>950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</p> <p>952 건설기계조종사</p> <p>959 골프장 캐디</p> <p>967 관광통역안내사</p> <p>958 대리운전기사·택송기사·대리주차원</p> <p>949 대여자제품방문점검원</p> <p>945 대출모집인(여신금융기관 소속)</p> <p>946 대출모집인(대출모집법인 소속)</p> <p>951 방과후학교 강사</p> <p>948 방문판매원·후원방문판매원</p> <p>941 보험설계사(생명보험사 소속)</p> <p>942 보험설계사(생명보험사 외 소속)</p> <p>986 살수차·고소작업차·카고크레인 조종사</p> <p>960 소프트웨어기술자</p> <p>947 신용카드회원모집인</p> <p>968 어린이통학버스기사</p>	<p>981 유치원·어린이집 강사</p> <p>964 유통배송기사</p> <p>982 퀵서비스기사(이륜자동차로 배송)</p> <p>983 퀵서비스기사(자가용자동차로 배송)</p> <p>984 퀵서비스기사(도보·자전거 등으로 배송)</p> <p>944 택배기사</p> <p>943 학습지·교육교구 방문강사</p> <p>963 화물차주(곡물가루·곡물·사료 운송)</p> <p>985 화물차주(기타 품목 운송)</p> <p>956 화물차주(수출입컨테이너 운송)</p> <p>953 화물차주(시멘트 운송)</p> <p>955 화물차주(위험물질 운송)</p> <p>962 화물차주(자동차 운송)</p> <p>954 화물차주(철강재 운송)</p> <p>961 화물차주(택배 지·간선 운송)</p>
<p>950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</p> <p>952 건설기계조종사</p> <p>959 골프장 캐디</p> <p>967 관광통역안내사</p> <p>958 대리운전기사·택송기사·대리주차원</p> <p>949 대여자제품방문점검원</p> <p>945 대출모집인(여신금융기관 소속)</p> <p>946 대출모집인(대출모집법인 소속)</p> <p>951 방과후학교 강사</p> <p>948 방문판매원·후원방문판매원</p> <p>941 보험설계사(생명보험사 소속)</p> <p>942 보험설계사(생명보험사 외 소속)</p> <p>986 살수차·고소작업차·카고크레인 조종사</p> <p>960 소프트웨어기술자</p> <p>947 신용카드회원모집인</p> <p>968 어린이통학버스기사</p>	<p>981 유치원·어린이집 강사</p> <p>964 유통배송기사</p> <p>982 퀵서비스기사(이륜자동차로 배송)</p> <p>983 퀵서비스기사(자가용자동차로 배송)</p> <p>984 퀵서비스기사(도보·자전거 등으로 배송)</p> <p>944 택배기사</p> <p>943 학습지·교육교구 방문강사</p> <p>963 화물차주(곡물가루·곡물·사료 운송)</p> <p>985 화물차주(기타 품목 운송)</p> <p>956 화물차주(수출입컨테이너 운송)</p> <p>953 화물차주(시멘트 운송)</p> <p>955 화물차주(위험물질 운송)</p> <p>962 화물차주(자동차 운송)</p> <p>954 화물차주(철강재 운송)</p> <p>961 화물차주(택배 지·간선 운송)</p>			

<p>고용보험</p>	<p>1. 자격 취득일은 해당 사업장의 노무제공계약에 따른 노무제공 개시일을 말합니다.</p> <p>2. 국적 및 체류자격은 외국인등록증에 적혀 있는 내용과 같게 작성하며, 외국인만 적습니다.</p> <p>3. 월 보수액은 노무제공월에 실제 지급된 보수액 또는 노무제공 개시 이후 월별로 지급이 예상되는 보수액을 적습니다. 다만, 직종이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6조의6제3항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(직종부호: 952), 시멘트·철강재·위험물질·수출입컨테이너·자동차·곡물가루·곡물·사료의 운송 화물차주(직종부호: 953~956, 962, 963), 택배 지·간선기사(직종부호: 961), 골프장 캐디(직종부호: 959)에 해당하는 경우 월 보수액을 적지 않습니다.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: 10px 0;"> <p>노무제공자의 보수액: 「소득세법」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과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을 더한 금액에서 같은 법 제12조제2호·제5호에 따른 비과세소득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.</p> </div> <p>4. 노무제공자(제3호 단서의 노무제공자는 제외합니다)의 경우 별도 서식인 고용보험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신고서(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지 제55호의2서식)를 작성하여 피보험자격을 취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월 보수액을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</p>
<p>산재보험</p>	<p>1. 이 서식은 건설업 및 벌목업 외의 사업(건설장비운영업 포함)에 노무를 제공하는 건설기계조종사(직종부호: 952) 및 살수차·고소작업차·카고크레인 조종사(직종부호: 986)인 경우 작성합니다. 다만, 골프장 캐디(직종부호: 959)는 입직일이 2023. 12. 31. 이전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.</p> <p>※ 그 외 직종에 종사하는 노무제공자의 경우 별도의 입직신고를 할 필요가 없으며, 노무제공 개시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 월 말일까지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신고서(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지 제55호의2서식)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</p> <p>2. 입직일은 해당 사업장의 노무제공 개시일을 말합니다.</p>

처리 절차

